

평창군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40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6년 12월 1일
제출자 : 유인환 의원 외 5인

1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사안을 자문하는 전문인력이 없어 의안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의회에 입법·법률 고문을 두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입법·법률고문의 직무와 고문으로 위촉된자의 직무금지사항을 규정함.(안 제2조)
- 나. 정원과 위촉자격 및 해촉 사유를 규정함.(안 제3조 내지 제5조)
- 다.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을 정함.(안 제6조)
- 라. 입법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실적부를 정리 보관토록 규정함.(안 제7조 내지 제8조)
- 마. 위촉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해 규정함.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집행부 의견 : 별첨
- 다. 예산조치 : 향후조치

평창군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에 입법·법률고문을 두고, 입법·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①입법·법률고문(이하 “고문”이라 한다.)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
2.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
3.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운영 및 의안심사·처리·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
4. 평창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고 한다)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
5.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

②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조(정원)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.

제4조(위촉) ①고문은 변호사, 대학교수,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·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 한다.

②입법·법률고문은 평창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.

③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받은 후 위촉장(별지 제2호 서식)을 교부한다.

제5조(해촉)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3.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
4.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
5. 입법·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6.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6조(임기)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) ①입법·법률에 관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실적부 비치)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(별지 제3호 서식)를 비치하고 기록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 등의 지급)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「평창군고문변호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승 낙 서

본인은 「평창군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 의회의 입법·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 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
성 명 : (인)

평창군의회 의장 귀하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위 촉 장

귀하를 「평창군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」 제4조제3항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입법·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평창군의회 의장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자문처리 실적부

자문사항				처리결과		
연월일	건명	의뢰인	자문내용	연월일	고문인	처리내용

관계법령 발췌

〈지방자치법〉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제35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조례의 제정 및 개폐

2.~11. 생략

②생략

제123조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재정 등)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